

- 2023년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-
제출서류 안내문

□ **제출서류**

① 거주지 및 연령확인	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- 모집공고일(2023.5.8.)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(2023.5.8. 이전부터)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(주민등록번호 뒤 여섯자리는 안보이도록 처리)		
② 고용형태 확인	비정규직 노동자	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(아래 서류 중 택1) ① 근로계약서(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) ② 재직증명서(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) ③ 재직증명서+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'비정규직 확인'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 기타 사실확인증명서(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+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)	
	특수형태 근로종사자	위탁/도급/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(아래 서류 중 택1)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(2023.5.8.)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※ 증빙서류 예시: 업무위탁계약서, 도급계약서, 용역계약서, 위촉계약서, 위수탁계약서, 재직증명서, 근로확인증명서, 강의약정서, 감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초단시간 노동자	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(아래 서류 중 택1) ① 근로계약서(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) ② 재직증명서(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) ③ 기타 사실확인증명서(현재 재직증빙+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)	
③ 소득확인	근로소득자·사업소득자	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※ 국세청홈텍스 ▶ 로그인 ▶ 민원증명 ▶ 소득금액증명	※ 국세청 발급 - 모집 공고일 (2023.5.15.) 이후 발급된 문서인정
	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	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※ 국세청홈텍스 ▶ 로그인 ▶ 민원증명 ▶ 소득금액증명	
	소득이 없는 자	2021년도 사실증명 ※ 국세청홈텍스 ▶ 로그인 ▶ 민원증명 ▶ 사실증명신청 ▶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▶ 신청	
① 22년도에 소득없음(0원)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②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/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→ 과세기간(귀속년도)을 2021~2022(2개년)설정하여 21년도 근로/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			

□ 인정불가 서류

<p>서류공통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PC/모바일 화면 촬영 혹은 캡처본 ② 한글 및 워드파일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서류는 JPG, PDF 등 수정 불가능한 파일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③ 열람용 문서·전자지갑 문서 ④ 화질 저하로 인해 정보 확인이 어려운 서류 ⑤ 제출 서류 페이지 일부 누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모든 서류 제출. 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- 여러 페이지를 한 번에 업로드 불가하므로, JPG파일의 경우 알집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함 ⑥ 서류 일부만 노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, 발급기관·일자·직인, 페이지 수 등 서류상 모든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- 단,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는 안 보이게 처리해야 함 ⑦ 발급처의 직인 누락
<p>주민등록 등본·초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소 발생일/신고일 미표기 · 주소 발생일이 모집공고일 이후
<p>고용형태 확인서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본인 및 대표자 서명 혹은 직인 누락 ·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재직증명서 · 정규직, 무기계약직의 재직증명서,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, 국민연금가입 증명서, 고용보험내역 등 근로형태와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제출
<p>소득확인서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년도 소득금액 서류 ·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확인증명서, 세액공제증명서,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국세청에서 발급한 「소득금액증명」 또는 「사실증명」이 아닌 모든 서류